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1가단50995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지배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2022. 6. 2.

판결 선고2022. 6. 30.

주 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9. 5.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17,933,113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933,1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채권의 존재

[별지] 원고의 채권 내역 기재와 같다.

나. D의 모인 E은 1998. 3. 18. 서울 송파구 F외 1필지 지상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8.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18. 12. 2.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I, D, J은 2019. 4. 20.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1. D가 그 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대부분을 개인용으로 사용하였기에 D를 제외하고 I과 J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각 50%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대출금 및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D를 제외하고 I과 J이 각 50%씩 배분한다.

다. 그런데, D는 2019. 4.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12.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2019. 4. 22. 이 사건 아파트를 14억 2000만 원에 K, L(이하, 'K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위 매수인들은 2019. 4. 24.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본 건은 소유주의 상속인 전원(I, D, J)과 체결한다.
- 소유권 이전 완료시 매도인은 매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은 매매대금과 대출잔액의 차액으로 하며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월차임은 155만 원이며 만기일은 2021. 1. 말까지로 한다.
- 소유권이전 완료 후 2019. 5. 15. 내로 매수인은 M은행 2건, N 1건의 모든 근저당권을 상환말소하기로 한다. 5. 15.까지의 모든 금융비용은 매도인 부담으로 한다.

라. K 등은 2019. 5. 10. D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5. 10.부터 2021. 1. 9.까지, 차임 월 150만원으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K 등을 2019. 5. 10. 피고에게 매매대금에서 매수인이 인수한 대출금 채무 등을 공제한 매매대금 잔액 53,799,339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9. 5. 10. I과 J으로부터 각 7000만 원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용도로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D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D가 K 등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잔액 53,799,339원을 피고가 지급받은 것은 D가 위 금액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위 증여계약 당시 D의 보증채무는 이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당시 D는 무자력이었으므로, D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무자력인 점과 D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K 등으로부터 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D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D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잔대금을 받았다면 그 매매잔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매매잔대금을 상속인이 아닌 피고가 지급받은 것이므로, 매매잔대금 중 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D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금액 중 17,933,113원(53,799,339원×1/3)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등 참조), D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종국적으로 D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피고는 D의 처로서 D의 무자력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상속인들도 아니고 매수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4,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반복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17,933,113원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염우영

별지